

인증표시 및 로고 사용 안내문

1. 인증마크 사용요령

- (1) 인증마크는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인정기관 마크와 ITS 인증마크를 동시에 표기하여 인증마크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(2)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, 확대가 가능합니다.(단, 최소크기가 15mm이상이어야 함)
- (3)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(인쇄, 복사 등)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(4) 인정기관 인증표시 색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Color Code PMS 7729C



<IAS인정마크>

- (5) 인정기관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(6) ITS의 인증마크 및 IAS의 인정마크는 통상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.

좌우대칭인 경우	상하대칭인 경우
   ITS 인증마크 IAS 인정마크	 ITS 인증마크   IAS 인정마크

- (7) 인증마크 파일은 ITS 홈페이지(www.itscert.or.kr)에서 제공됩니다. "인증로고 사용안내>다운로드"

인증표시 및 로고 사용 안내문

2.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

- (1)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(2) 제품자체(단위포장 포함)에는 인증마크를 제외한 인증문구의 표기만 가능하며, 제품의 포장에는 인증마크 및 문구의 표기가 가능합니다.
(예: **제품 또는 단위 포장** :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뱃값, 통조림, 음료수캔 등의 용기와 같이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 포장, **제품의 포장**: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,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,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)
- (3)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경우,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일지라도 인증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(4) 제품 및 제품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등록 사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.

아이티에스인증원으로부터 KS Q ISO 표준에 따라 인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에
의해 제조된 (제)(품)(명)

- (5)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,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(6)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(예: 세계적 품질확보,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)
- (7) 인증획득기업은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·인증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3. 인증마크 오용시 조치

- (1)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 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시된 아이티에스인증원의 시정조치가 송부됩니다.
- (2)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아이티에스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(3)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아이티에스인증원 "검증 및 인증등록 절차" 에 따라 인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때, 인증서는 회수되며 필요 시 위반사실은 공표(정정공고)될 수 있습니다.
- (4)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